

# 감 사 원

## 통 보

제 목 관허사업 제한대상 명확화 필요

소 관 기 관 행정안전부

조 치 기 관 행정안전부

내 용

### 1. 업무 개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소관 중앙부처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업무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관허사업 제한 업무처리 매뉴얼」(이하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정·운용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관리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관허사업 제한대상 조회’ 항목을 통하여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를 추출하고 있는데, 이 항목은 지방세정보시스템상의 지방세 체납자 정보(체납자 인적사항, 체납 횟수, 체납액 등)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별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sup>66)</sup>의 면허(허가 등) 정보(면허보유자 인적사항, 면허 종류 등)를 상호 연계하여 지

---

66)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신고 사항이 열거되어 있음(제1종: 232개, 제2종: 195개, 제3종: 253개, 제4종: 195개, 제5종: 47개)

방세 체납자 중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면허 보유자가 있으면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다.

##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세징수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에는 허가 등의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러한 요구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은 체납자가 경영하는 사업 관련 허가 등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면허(허가 등)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관허사업 제한대상 조회’ 항목을 구축할 때에는 먼저 그 면허가 관허사업 제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매뉴얼 등에 이를 명확히 정함과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업무매뉴얼(2014년 6월, 구 안전행정부)에 ① 일반적인

제한이나 금지를 해제(예시: 주류제조 면허)하는 행정행위인지 여부, ②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예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하는 행정행위(허가 등)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관허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관허사업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하여 일부 비(非)관허사업에 해당하는 허가 등 및 질의·회신 사례만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 관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별표]의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면허(허가 등)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정기분<sup>67)</sup>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면허 전체를 관허사업 제한대상으로 추출되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허가 등이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민간자격 등록 등 5개 허가를 선정<sup>68)</sup>하여 구미시 등 4개 감사대상기관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시행한 실태를 표본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별은 물론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업무 담당자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조치가 달리 처리되고 있었다.

[표 1] 5개 허가 등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조치 시행 현황(2015~2017년)

(단위: 건)

구분	계			구미시			경산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전체	시행	미시행	전체	시행	미시행	전체	시행	미시행	전체	시행	미시행	전체	시행	미시행
민간자격등록	15	7	8	1	1	-	-	-	-	9	6	3	5	-	5

67)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면허는 건축물 착공 신고와 같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있는 반면, 공장 등록과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있음

68) 이번 감사과정에서 구미시 등 4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이 관허사업 제한조치 대상으로 추출되는 면허 중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한 5개 허가 등을 선정

구분	계			구미시			경산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전체	시행	미시행	전체	시행	미시행	전체	시행	미시행	전체	시행	미시행	전체	시행	미시행
도로점용허가	24	16	8	13	5	8	8	8	-	3	3	-	-	-	-
폐수 등 배출시설 신고	99	68	31	40	11	29	34	34	-	12	11	1	13	12	1
주택임대사업자등록	52	46	6	17	14	3	7	7	-	23	23	-	5	2	3
공장 등록	161	143	18	52	34	18	81	81	-	6	6	-	22	22	-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표 2]와 같이 구미시 등 4개 감사대상기관에 5개 허가에 대하여 공식적인 관허사업 제한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업무매뉴얼상 관허사업의 판단기준 및 질의·회신 사례 등과 다르게 판단하거나, 동일 허가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었다.

[표 2] 5개 허가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대상 해당 여부 판단 현황

구분	업무매뉴얼, 질의·회신 등	구미시	경산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민간자격 등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도로점용허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폐수 등 배출시설 신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기준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해당 없음
공장 등록	해당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일부 해당 (건축면적 500㎡ 이상)	일부 해당 (건축면적 500㎡ 이상)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위와 같은 관허사업 제한조치 시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혼선으로 인하여 관허사업 제한조치의 일관성이 일실되고 있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sup>69)</sup>, 관허사업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허가 등을 정지하거나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행정안전부는 연구용역, 자치단체 합동작업 특별조직(TF)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면허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대상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관허사업 제한 업무처리 매뉴얼」 등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별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의 면허(허가 등)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한 후 이를 반영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관허사업 제한대상 조회’ 항목을 구축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69) 구미시 등 4개 감사대상기관은 모두 현행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관허사업 제한대상 조회’ 항목은 관허사업 제한대상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허사업 제한대상으로 추출되고 있어 관허사업 제한업무 수행 시 혼선이 발생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므로 이를 명확히 한 후 이에 맞추어 위 시스템을 구축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추가로 제시